



새만금, 텅빈 갯벌에서 '1호 투자진흥지구'로

- 축구장 1100개 넓이 경제특구 선포식...경제효과 15.9조원, 일자리 창출 8만개
-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전북·전국 경제 활력소

□ 한덕수 국무총리(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)는 6월 30일 15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'제1호 투자진흥지구' 지정*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에 참석하였다.

*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새만금사업법 시행일(6.28.)에 따라 같은 날 지구 지정

○ 이번 선포식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와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새만금의 탈바꿈된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, 새만금 관련 국정과제*의 조기 이행을 기념하는 자리이다.

* (국정과제 38번)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(투자여건 개선, 인프라 지원 등)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

○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,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, 김관영 전북도지사, 강임준 군산시장, 정성주 김제시장, 권익현 부안군수,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,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,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김동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.

□ 이번에 지정·선포되는 '제1호 투자진흥지구'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·2·5·6공구(8.1km²)로, 여의도 면적의 약 2.8배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이다.

<<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위치도 >>



□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입주기업들은 법인세·소득세 100%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*을 받을 수 있고, 이로 인한 투자이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5.9조원, 간접적 고용창출은 약 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** 된다.

*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2년간 50%, 공유수면 점용·사용료 10년간 면제

** 한국은행이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(2015)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

□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정부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적용된 사례로, 새만금 지역은 기업투자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'제1호 투자진흥지구'에 이어 추가 매립되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·7·8공구와 매립 준공된 수변도시 등 개발이 가시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권역 전체까지 확장해나갈 계획이다.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“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새만금 개발에 더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”이라면서, “정부는 앞으로도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김용태 (044-200-1903)
	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	담당자	사무관	김대한 (044-200-2544)
담당 부서 <공동>	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정수 (044-201-3684)
	성장거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임영환 (044-201-3687)
담당 부서 <공동>	새만금개발청	책임자	과 장	김진후 (063-733-1080)
	개발전략국	담당자	사무관	이지호 (063-733-1084)
	계획총괄과		사무관	김소정 (063-733-1094)

참고 1**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****□ 행사 개요**

- (時/所) '23.6.30. (금) 15:00~15:30 / GSCO 컨벤션홀
- (참석자) 국무총리,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, 새만금개발청장, 전북도지사, 군산시장, 김제시장, 부안군수,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, 산단 입주(예정)기업 등
- (주요내용)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 등

□ 행사 일정(안)

식순	시간		내용	비고
오프닝	15:00~15:06	6'	▪ 개식선언 및 홍보영상 상영	
경과보고	15:06~15:11	5'	▪ 경과보고	새만금개발청장
축사	15:11~15:16	5'	▪ 축사	총리
격려사	15:16~15:22	6'	▪ 격려사	전북도지사 기업대표
선포식	15:22~15:29	7'	▪ 선포식 퍼포먼스(축포 등)	주요내빈
폐식선언	15:29~15:30	1'	▪ 폐식선언	

《 제도 개요 》

□ 투자진흥지구 정의

-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

구분	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	비고
지역	■ 새만금사업지역	■ 군산·김제·부안
대상	■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	■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
혜택	■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2년간 50%	■ (감면한도) 투자누계액의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
	■ 공유수면 점용·사용료 10년간 면제	

□ 적용요건

-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~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~30명 이상의 고용 필요(제조업은 20억원, 30명 이상)

투자금액	상시근로자수	영위업종
5억원 이상	10명 이상	■ 연구개발업
10억원 이상	15명 이상	■ 복합물류터미널사업,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■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
20억원 이상	30명 이상	■ 제조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전기통신업 ■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■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■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녹음시설 운영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■ 공연시설 운영업, 공연단체,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, 관광호텔업·수상관광호텔업·한국전통호텔업 (카지노업, 보세판매장업은 제외) ■ 전문휴양업·종합휴양업·관광유람선업·관광공연장업 (휴양콘도미니엄업, 골프장업은 제외) ■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업, 관광식당업 ■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,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■ 궤도사업 ■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

□ 지정방법 및 절차

- (방법)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
- (절차) 지정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가 필요

《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요 》

□ 지정 개요

- (위치) 국가산업단지 1·2·5·6공구(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)
- (면적) 8.1km²(245만평, 여의도 면적의 약 2.8배)



- (지정방식)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

□ 투자·고용규모: **약 6조원의 투자 및 4천8백여명의 고용(예상)**

- 사업장 신설 예정인 7개사(입주계약·투자협약 완료 기업)
 - ⇒ 2조 2,172억원의 투자 및 1,560명의 고용
- 산업단지 잔여부지에 추가 투자유치(기존 투자협약 평균치 적용)
 - ⇒ 약 3조 7,821억원의 투자 및 3,234명의 고용창출

□ 기대효과

- 예상되는 투자가 이행될 경우 국내에 약 15.9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
 - 특히, 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54%인 8.6조원과 간접 고용창출의 약 63%인 5만명의 인력이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

참고 3

타 투자진흥지구와의 비교

구 분	새만금 투자진흥지구	제주 투자진흥지구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
투자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5억원 이상, 10명 이상 고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업 · 10억원 이상, 15명 이상 고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- 공동집배송센터 조성·운영 사업 - 항만시설운영사업,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· 20억원 이상, 30명 이상 고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, 엔지니어링사업 - 전기통신업 -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- 정보서비스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-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녹음시설 운영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-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- 공연시설 운영업, 공연단체,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천만달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(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은 제외) -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관광공연장업 -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, 관광식당업, 마리나업 · 500만달러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산업, 노인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궤도사업 -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사업 - 자율학교, 국제고등학교,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- 외국의료기관, 의료기관(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은 제외) - 교육원 -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-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0억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(골프장업 제외)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 - 청소년수련시설, 교육원 -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· 5억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산업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(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은 제외) -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, 관광유람선업, 관광공연장업 (휴양콘도미니엄업, 골프장업은 제외) -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업, 관광식당업 - 노인복지시설, 청소년수련시설 - 궤도사업 -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사업 	<p>연구개발서비스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- 화장품제조업 - 연구개발업(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, 화장품제조업, 식료품제조업, 음료 제조업) 	
--	--	--	--